

배포 일시	2023. 1. 6.(금)	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	책임자	과 장 우정훈 (044-201-3538)
		담당자	팀 장 홍 철 (044-201-4990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민·관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- 부당한 노조 전임비 요구, 창원 행복주택 건설현장 관련 대응방안 등 논의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·관 협의체 2차 회의를 5일 개최하였다.
 - 이 날 논의된 안건은 ▲요건을 갖추지 않은 노조전임비 요구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대처 방안, ▲창원 행복주택 현장 관련 대응 방안 등이다.
-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요건을 갖추지 않은 노조전임비 등 요구 관련

▶ 일명 '노조전임비'

- 「노동조합법」 제24조에 의한 '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'를 의미함
- ①근로자가 ②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③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임금 손실 없이 ④사용자와의 협의·교섭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·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

- 노조전임비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이나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단체협약을 맺지 않은 노동조합이 노조전임비를 요구하고 있으며,
 -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'노동조합 간부' 또는 '노동조합 지부'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변질되어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.
 - 또한,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도, 근로자가 아닌 '인원'에 대하여 일정한 공수를 지급하도록 명시하여 「노동조합법」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.

- 이러한 사례는 「노동조합법」에서 금지하고 있는 **부당노동행위**(노동조합 운영비 원조행위)에 **해당**할 수 있다고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적하였다.
- 한편, 건설 현장에 찾아온 일부 노동조합은 '노조발전기금'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으며, 이 역시 **부당노동행위에 해당**한다.
- 건설 업계는 노동조합에서 찾아와* 노조전임비 등을 요구할 경우, 노동관계 법령 상의 제도를 알지도 못하며,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**요구를 수용**하는 관행이 있다고 전했다.
 - * 노동조합 명칭이 들어간 '명함'을 제시하며 채용 또는 임금 관련 협상을 요구
- 이러한 사항이 지난 수년 간 되풀이 되면서 최근 조사된 일부 현장에서는 10여개의 노동조합이 찾아와 노조전임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.
- 이와 관련, '깜깜이 노조'의 성행 방지를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도 제시되었다.
- 이에, 국토교통부는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'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' 등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**개선방안을 논의**할 계획이다.

② 창원 행복주택 현장 관련 대응 방안

-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(이하 LH)의 **창원 행복주택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부당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**도 논의되었다.

◆ 창원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부당행위 개요 (LH가 파악한 현황)

- ▶ A 노동조합에서 건설 현장의 B 하도급 업체를 찾아와 **채용 협상*** 요구(22.10.31.)
 - * 채용은 기업의 경영 자율권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노동조합의 요구 대상이 아님
 - (요구조건) ①A노조 소속 근로자 팀별(목수, 철근공, 콘크리트공, 펌프카) 채용
 - ②팀별 인건비 보장(관리장 月 900만원, 팀장 月 800만원, 반장 月 700만원)
 - ③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A노조 소속 근로자의 적자 보전
- ▶ B 업체는 비노조원 소속의 근로자를 채용 중인 상황이고, A 노조의 임금조건 요구를 수용할 경우 사업 손실도 우려되어 A 노조의 요구를 미수용(22.12.15.)
- ▶ A 노조는 협상이 결렬되었다며 A 노조 소속 레미콘 운반자에게 해당 현장에 레미콘 납품 금지를 공지(문자 2회) → '22.12.16. 이후 레미콘 반입 중단, 해당 공사 중단 중
- ▶ C 원도급 업체는 A 노조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상황

- LH는 창원 현장에서 발생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가 가려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.
- 아울러, LH는 본사(건설안전처, 법무단) - 지역본부(현장)가 참여하는 전담팀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,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건에 대한 형사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·형사 대응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.
 - 이와 관련, 공사가 진행 중인 전체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행위 전수 조사에 착수('23.1.4.)하였으며,
 - 불법행위 유형, 공사진행 영향, 피해 공종, 누적 중단기간, 공사비 증액 여부 등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.

□ 한편, 국토교통부는 5개 권역의 국토관리청에 전담팀을 신설한다.

- 이번에 신설하는 전담팀은 본부에서 각 국토관리청에 2~3명의 인원을 보강(전보)하는 이례적인 방식*으로 구성된다.

* 통상 국토관리청 내 자체 인원으로 전담팀 구성이 일반적

- 이번 전담팀 구성은 현장 조사·점검 등 현장 활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금주 중 인원 선발을 마치고 내주 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.

□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 대책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현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.